

수신 충주시의회의장

1998. 12.

제목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안

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

실업률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변경을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불임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안

제안자 :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(✉)

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안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의년월일 : '98. 12.

제안자 : 실업및지역경기
부양대책특별위원회장

1. 제안이유

- IMF 체제이후 기업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문제가 지역경기를 침체시키고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 실업자 생활안정 및 지역경기부양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
-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당초	변경
운영기간 '98. 8. 28~ '98. 12. 31.	운영기간 '98. 8. 28.~ 지역경기활성화 시까지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58조
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조